



2026년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의료 시 공동 연구 과제 지원요강



1. 공모내용

구분	의료 인공지능 과제
지원 연구비	과제당 2,000만원 이내
신청자격	- 한림대학교 소속 조교수, 부교수, 교수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 소속 조교수, 부교수, 교수 - 한림대학교 의료원 소속 임상조교수, 임상부교수, 임상교수
연구기간	연구 시작일로부터 1년
최소요구성과	SCI 논문 1편
비고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참여 학생을 주저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사사표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공동 사사표기 가능.)

- 주 1) 연구 진행 중 연구주제 변경 및 연구기간 연장은 불가함
 2) 임상조교수 및 임상부교수는 선정 시 의료원산학단 소속 무급연구원으로 등록함
 3) 프로젝트 선정 후에는 반드시 사업단 참여 인력으로 등록해야 하야함.
 4) 본 사업은 3책 5공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참여율은 계상되는 과제임.
 5) 프로젝트 팀 구성은 한림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1인, 한림대학교의료원 소속 전임교원 1인, 사업단 참여 학부생 1인 이상, 대학원생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2. 신청 제외 대상

- 가. 신청일 현재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 중에 있는 교원
 나. 기 지급받은 연구비에 의한 연구결과를 보고한 후 SCI 등재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교원
 다. 연구진흥제도 의무사항 미준수(현재 패널티 상태 중) 교원
 라. 연구비가 지급 중지 또는 회수된 교원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교원
 마. 신청일 현재 휴직 중인 교원 및 해외연수 중인 교원

3.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서 양식 "별표" 참조)

-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이메일 접수(de3796@hallym.ac.kr)

4. 향후 진행일정(안) ※ 세부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추진 일정	내 용	비 고
2026. 2. 6.	공모 계획 공고	사업단
2026. 2. 20.	신청서 접수 마감	사업단
~ 2026. 2. 27.	신청서 심사 및 발표	사업단
2026. 3. ~ 2026. 11.	프로젝트 과제 수행	연구진(팀)

5. 연구비 집행 방법

구분	집행방법	비 고
인건비	- 인건비 지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심사 후 지급	-인건비 지급 대상자 관련 사항 :의료원 임상연구과제운영지침 인건비 지급관련사항 내용 참고
직접경비	- 연구비 전용 법인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연구비 집행 기간: 1년	- 연구비는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맞추어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단을 통해 신청

6. 의무사항

가. '의료원임상연구비관리규정' 및 한림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나. 결과물 인정 기준

- 연구결과는 계획된 연구기간 후 1년 이내 SCI학술지에 논문 1편을 게재·발표하여야함.
- 연구결과는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참여 학생을 주저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사사표기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공동 사사표기 가능.)
- 연구개시일 이후에 투고한 논문만 의무사항 이행으로 인정
- 사사(Acknowledgement)는 연구비 지원 금액/기관에 따라 단독 또는 병기[2개 기관]로 표시 가능

[사사(Acknowledgement) 표기방법]

1.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 국문: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번호: RS-2025-02313201)
-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 RS-2025-02313201)

2. 한림대학교의료원

-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Hallym University Research Fund, 2025(HURF-2025-과제번호).

다. 다음의 경우 연구비의 지급 중지 및 회수 가능

-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연구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연구책임자의 사직등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 연구기간 수행 중 연구책임자 퇴직한 경우
- 연구기간 종료 후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라. 연구비 내 각 항목별 금액산출 및 집행기준은 "연구비 내 각 항목별 금액 산출 및 집행 기준" 참조
마. 최소요구성과 미제출시 성과물 제출 전까지 연구진흥제도 신청제한 패널티 부여